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02 발의연월일: 2020. 9. 28.

발 의 자: 김수흥 · 김경만 · 정일영

윤후덕 • 박재호 • 박홍근

윤재갑 • 위성곤 • 김경협

박찬대 • 양향자 • 서삼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에 따라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규제가 강화되었음. 「항만지역등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라국내 연안화물선에도 2021년부터 황함유량 기준 0.5% 이하 연료유 사용이 의무화되어 유류비용 급증이 예상됨.

외항화물선과 여객선·어선 등은 사용하는 모든 연료유에 대하여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 중유사용을 중단하고 경유로 전환하여도 유류비용에 큰 영향이 없음. 반면 연안화물선은 연료유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어 규제에 따른 비용을 고스란히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유통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선사의 경영악화는 물론 운송물품의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한편, 도서지역에 생필품을 수송하는 필수 교통수단인 중소형 연안

화물선은 그간 경유(중유 대비 황함유량이 1/7 수준)를 사용함으로써 중유 유류세 대비 27배 높은 조세 부담을 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도서와 육지간 물류 유통 지원을 위하여 이를 감내하여 왔음. 그러나 최근 소형 유조선에 대한 선체규정 강화, 대기환경 규제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기존부터 경유를 사용하였던 소형 선박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생계형 사 업자를 지원하고자 함.

이에 정부 규제에 따라 연안화물선이 연료유로 사용하는 경유에 부과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여 도서와 육지 간 물류 유통을 전적으로 담당해 온 영세 연안화물선사에 대해 불공평을 바로 잡고 업계의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1조의5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1조의5(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①「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공급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 2호에 따른 경유(이하 이 조에서 "경유"라 한다)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리터당 318원 감면한다. 이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이 감면되는 경유에 대하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 제41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세액을 확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③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를 해당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 1. 해당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된 경유를 공급하는 한국해운조합이 관련 증거 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부실관리로 인하여 감면대상이 아닌 선 박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를 공급 한 경우에는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제3항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 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
- ⑤ 제1항에 따른 경유의 공급 및 관리절차, 감면세액과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의 추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로 징수하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급하는 경유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 <u><신 설></u>	제111조의5(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① 「해운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공급하기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에 직접공급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 경유(이하 이 조에서 "경유"라 한다)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리터당318원 감면한다. 이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이 감면되는 경유에 대하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교통·에너지·환경세법 <u>」</u>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 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③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를 해당 사 업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 액을 추징한다.
- 1. 해당 경유에 대한 교통·에 <u>너지·환경세</u>, 교육세 및 자 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

 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된 경유를 공급하는 한국해운조합이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부실관리로 인하여 감면대상이 아닌 선박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를 공급한 경우에는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제3항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로 징수한다.
(5) 제1항에 따른 경유의 공급및 관리절차, 감면세액과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의 추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